

울산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49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나49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5가소3432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황혜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종현

변론 종결 2019. 11. 14

판결선 고 2020. 1. 9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5가소343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9. 2. 22. 제1심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2. 22.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통장과 보안카드를 관리하던 중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09. 12. 5.

1,500,000원, 2010. 1. 26. 3,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이체하여

부당이득하였는바,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며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법검찰청은 2015. 6. 26. 피고가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점,②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를 통해 이 사건 금원송금 이외에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 ③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된 비용 일부가 출금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판사 이필복판사 목명균